

## 職業으로서의 教授

朴 洪 圭

(嶺南大 公法學科)

---

교수 중에는 강의도 특정 요일과 시간에 몰아서 하루이틀에 처리하고, 심지어 그것마저 휴강을 일삼는 교수도 있다. 그리고 그 외 시간에는 다른 곳에서 다른 일을 한다. 근무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것은 교수에게 합법적으로 부여된 특권인가. 강의시간만 지키면 교수로서의 직무는 완결되는가. 제대로 된 논문이나 저서 하나 없이 지내도 좋은가. 職業人으로서 教授의 態度는 논의된 적이 없다. 그러나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도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

### 1. 머리말

‘직업으로서의 교수’라는 이 글의 제목을 보고 막스 베버의 ‘직업으로서의 학문’을 상기하는 분이 계신다면 대단히 미안한 일임을 미리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베버는 고상하게도 학문 자체에 대해서 주로 얘기했으나, 이 글은 학문 자체와는 관계없이 교수의 職務(위대한 학자는 이것을 하찮은 것이라고 볼지 모른다)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대학의 국제경쟁력이 심각하게 문제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대학은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다. 시설이 웬만한 후진국 대학수준도 안되고 학문의 수준이나 교수수나 질도 형편이 없어서 이런 식으로는 영원히 몰락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다. 그런데 대학교수의 자질 이전에 기본

적인 태도 내지 직무의 문제는 전혀 논의된 적이 없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도 심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곧 직업으로서의 교수문제이다. 직업인으로서의 교수의 態度 문제이다.

교수가 아닌 일반인이 직업으로서의 교수를 부러워하는(또는 멸시하는) 이유 중의 몇 가지(어쩌면 전부)는 제멋대로 놀 수 있는 방학이 있어서 좋고, 강의가 없는 날에는 학교에 가지 않고 마음대로 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 거의 반년을 놓고 나머지 반년도 책임강의시간이 1주 9시간, 1월 36시간이므로 그 외의 시간, 곧 대부분의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곧 1년에 9일 정도 일하고 나머지 356일을 놀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월급을 평생 보

장받는 안정된 직장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사회적 대우도 받는다고 한다.

교수들 중에는 강의도 특정 요일, 시간에 몰아서 하루이틀에 처리하고(그것도 수십 년 전의 노트읽기로) 심지어 그것조차 휴강을 일삼는 교수도 있다. 그리고 그 외의 시간에는 다른 곳에서 다른 일을 한다. 심지어 지방대학에는 서울에 사는 교수들이 2, 3일만 지방에 오고 방학은 물론 평시에도 학교와 담을 쌓고 지내는 교수가 드물지 않다. 물론 이 나라의 교수가 다 그런 것은 아니겠다. 방학이든 아니든 연구실에서 꼭 두세벽부터 밤늦게까지 강의·지도·연구하는 교수도 있다.

근무시간도 없이 멋대로 굴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과연 교수에게 합법적으로 인정되는가? 교수는 직장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식이나 규율도 적용받지 않고 살 수 있는가? 교수나 시간강사나 하는 일은 동일한가? 강의시간만 지키면 교수로서의 직무는 완결되는가? 게다가 평생 제대로 된 논문이나 저서 하나 없이 지내도 좋은가? 낡은 노트 불러주기로 좋은가?

## 2. 合法性의 문제

먼저 합법성에 대한 문제부터 생각해보자. 교육법상 교수는 학생을 교수·연구·지도하되, 연구 및 지도에만 종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그 외의 것을 해서는 안 된다.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은 국가공무원에 준용된다. 곧 교수는 공·사립을 막론하고 공무원에 준해지고 있다. 이러한 법구조는 많은 문제점을 갖는 것이나, 적어도 교수가 公共의 性格을 갖는 것임은 부정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복무에 대하여 법령준수와 성실직무수행의무, 직무상 명령에 대한 복종의무, 정당한 이유 없는 직장이탈금지의무, 친절공정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정치운동의 금지, 집단행위의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치운동과 집단행위의 금지에 대해서는 헌법과 관련하여 충분히 위헌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기타의 의무는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생각

된다.

따라서 그러한 당연한 의무를 유기하면 국립대학의 교수는 형법상 직무유기, 사립대학의 경우는 배임에 해당하고 자체 징계를 면할 수 없다. 그러나 방학 때 학교에 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강의시간 외에는 학교에 나가지 않고 골프를 치거나 바둑을 둔다고 해서, 심지어 휴강을 한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받거나 징계를 받았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 학생이 교수를 찾아가 지도를 받고자 했으나 교수가 없어서 그것이 불가능했다든가, 성적의의를 제기하고자 했으나 교수를 만날 수가 없었다든가 하여 교수를 고소한 학생이 있다는 얘기는커녕 항변이라도 했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없다. 심지어 휴강한 교수에게 항변은커녕 박수를 친다는 지경이다. 휴강이 명강이라는 얘기까지 있다.

교수는 강의시에도 아무런 친절을 베풀지 않아도 좋다. 강의계획서를 사전에 배포한다든가 강의교재를 마련한다든가 하는 것도 의무가 아니다. 게다가 강의는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는다. 학생이 불만이 있어도 강의방법이나 내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기란 쉽지 않다. 강의에 있어서 교수는 절대적인 독재자이다. 수업시간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10분 늦게 시작하여 10분 일찍 마치는 경우도 있다. 출석점검이 강요되므로 대형강의의 경우 그것으로 강의의 상당부분이 허비되기도 한다.

방학은 휴강을 의미하나 중·고교와는 달리 학생들의 상당수는 도서관에 나온다.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모르는 것이 생길 수 있다. 그 경우 학생들은 교수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대학원생의 경우 그러하다. 그러나 대학원의 경우 수업도 제대로 행해지지 않는다.

교수는 연구비를 받을 뿐만 아니라 연구명목의 돈도 월급으로 받는다. 연구비는 연구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실은 생활비로 충당된다. 몇 년 전까지는 그 대가로 1년에 1권의 논문집필이 교수의 의무였으나, 소위 민주화 이후 그것도 없어져 대학논문집의 두께가 형편없이 되었다. 그렇다고 외부논문집에 글을 실는 것도 제한되어 있다. 결국 연구결과는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면서도 연구의 자

유, 그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노래한다.

교수는 치의법권의 특권자인가? 실제로 교수가 최소한의 의무라고 지키는 것은 해외출장이나 휴직시에 학교의 허락을 받는 정도이고, 기타 요식을 충족하는 경우는 연구비 등 이익이 생기는 경우뿐이다.

### 3. 교수는 自由業者인가

오늘 이 나라의 교수는 자유업, 심지어 부업으로 여겨지는 경향도 있다. 자유업이란 일정한 자격을 갖는 사람이 자유롭게 사무실을 차려서 손님을 맞아 부탁받은 일을 자의로 처리해 주고 멋대로 돈을 받는 일이다. 가령 변호사나 의사가 그렇다. 그러나 변호사의 경우는 약간 다르지만, 의사는 요즈음 자유업이라고 하기 어렵다. 고용된 의사는 물론 자유업자가 아니고 개업의 사라도 출·퇴근시간과 근무시간이 거의 고정되어 있다. 그러나 교수는 그렇지 않다. 문제는 교수가 손님을 임의로 맞고 그의 부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다면 자유업자이나 사실은 그렇지 않고 월급쟁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결코 자유업자일 수 없다.

우리가 오늘날 자유업자로 부르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나름의 職業倫理를 가지고 있다. 변호사나 의사는 물론 소매상인들도 거의 정해진 출·퇴근시간을 지킨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장사를 위한 것이나, 신용과 봉사정신에 입각한 것이기도 하다. 제멋대로 문을 열고 닫는다면 손님은 곧 끊길 것이고 장사를 망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교수를 실령 자유업자로 본다고 해도 휴강을 일삼고 나머지 시간을 멋대로 보낸다면 망조가 든 자유업자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교수에게는 평생 월급이 보장되므로 그럴 걱정이 없다.

교수를 副業으로 생각하는 경향은 더욱 부당한 일이다. 교수의 본업이 따로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업을 따로이 갖는 사람이 많고 심지어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 물론 교수들은 공개적으로 본업을 과시하지는 않는다. 그것을 교묘하게 은폐한다. 왜냐하면 이는 명백히 현행법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 4. 勤勞者로서의 교수

그러나 교수는 자유업자도 부업도 아니다. 교수는 월급쟁이이다. 교수는 근로자이다. 교수는 독립노동자가 아니라 종속노동자이다. 교수는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 임금은 사용자가 지급하나 그 실제의 지급자는 학부모들이다. 학부모는 세금을 내고 공납금을 내어 자녀의 교육을 대학에 위임한다. 대학은 그 돈으로 교수를 고용하여 학생을 가르치게 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교수에게 월급을 주는 학부모와 학생이 근로자인 교수에 대한 사용자 또는 권리자이다. 나아가 학생은 소비자이기도 하다. 학생은 우수한 상품을 소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불량한 생산에 대해 항의하고 양질의 생산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한 대학교육의 중심은 講義와 指導이다. 교수는 최소한 정해진 시간에 강의를 하고 강의 외의 시간에 학생을 지도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강의와 지도를 위하여 연구하여야 한다. 여기서 연구란 강의와 지도에 종속되는 것이다. 학생에 대한 강의와 지도의 대가로 월급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의 및 지도와 무관한 개인적 연구는 엄격하게 말하여 교수로서의 연구가 아니다.

교수들은 흔히 學問의 自由를 주장한다. 그러나 그것은 집에서 연구해도 좋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물론 반드시 학교에서 연구해야 한다는 법도 없고 그것이 효과적일 수도 없다. 연구를 어디에서 할 것인가는 교수의 자유이다. 그러나 연구는 강의와 지도를 위한 것이지 그것과 무관한 것일 수가 없다. 따라서 강의와 지도를 위해 교수는 근무시간에 학교에 출근하여야 한다. 강의와 지도가 교수의 본분이지 연구는 채용시에 일용 충족된 것으로 간주된다. 물론 연구는 계속되어야 하나 실제로 채용과 함께 연구가 종료되는 경우도 흔치 않다.

교수의 방을 연구실이라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은 '지도'실이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학생들을 지도하는 방으로 기능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1년을 두고 연구실을 이용하지 않는 교수들도 많다. 강의시간 전후에 비

쪽 왔다가는 사람도 많다. 연구실은 아예 대학원생들의 공부방으로 이용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게다가 대학에는 교수대기실도 있다. 사실은 휴게실인데 근무시간중 차를 마시고 바둑을 둔다든가 한담을 하는 곳으로서 이용되는 점에는 문제가 많다. 필자는 그 방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 게다가 왜 그 방에 별도의 직원이 상주해야 하는지도 알 수 없다. 교수가 이용하지 않는 연구실은 폐쇄하고 대학원생에게 돌려주든가 직무위배를 야기할 수 있는 휴게실도 폐쇄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근로자로서의 교수는 研究結果를 반드시 발표하여야 한다. 연구는 보수상 의무로 지정되어 있다. 연구비는 원칙적으로 연구에 사용하여야 하고 그 결과는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 혼자서 아무리 박식하여도 공개되지 않는 한 그것을 연구의 결과로 알 수 없다. 따라서 최소한 1년 1편 이상의 논문발표는 교수의 의무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민주화바람으로 없어진 것은 참으로 잘못된 방증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다.

## 5. 남의 나라에서는?

남의 나라 얘기를 해서 안 됐으나 그 곳의 교수들은 매일처럼 대학에 나와서 철저히 강의하고, 연구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유일한 예외는 프랑스인데 그 곳 교수들은 강의부담 외에는 몹시 자유롭다. 프랑스가 자유의 천지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교수들은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파트타임, 곧 시간제 근무자인 탓이다. 말하자면 시간강사인 셈이다. 프랑스를 제외한 다른 나라의 교수는 대부분 전임자, 곧 풀타임으로서 대학을 직장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강의시에는 물론이고 강의가 없어도 일 년 열두 달 연구실에 나와 연구를 하고 학생을 지도한다. 그 결과 매년 우수한 논문이나 저서를 낸다. 그러한 결과가 없으면 반드시 쫓겨난다.

외국의 교수들은 學生指導에 여념이 없다. 그것이 가장 철저한 나라는 영국일 것이다. 영국에서는 전통적으로 개인지도가 중시되어 온 전통이 있었으나 강의제가 일반적인 지금도 학생 지도는 철저하다. 교수들의 하루는 학생들과의

면담으로 꼭 짜여진다. 그들은 학생들의 질문만이 아니라 특히 리포트의 지도에 충실하다. 리포트는 철저히 교수에 의해 검토되고 토론된다. 우리의 경우 리포트는 참으로 불성실하다. 쓰는 학생도 보는 교수도 불성실하다.

## 6. 맺음말

우리나라의 교수는 시간강사가 아니다. 교수도 엄연한 직장인이다. 기본업무인 강의를 철저히 하여야 함은 물론 강의 외의 시간에는 강의 등을 위하여 연구하고 학생들을 지도하여야 한다. 그것은 적어도 정규근무시간에는 대학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논저로 발표하여야 한다. 이제는 그것을 법적으로 문제삼아야 할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우리 대학의 위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교수의 직무유기에서부터 검토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필자는 각 대학이 나름의 自律的인 教授職務에 대한 기준을 만들고 지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출·퇴근에 대한 규정, 강의의 준비와 내용에 대한 규정, 시험과 리포트 평가에 대한 규정, 논저의 발표의무에 대한 규정, 연구 결과는 물론 강의에 대한 상호평가(교수상호간 및 학생에 의한)제도 등은 그 안에 최소한 포함되어야 한다. 강의와 지도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아무리 많아도 수강생을 1백명 이상 받아서는 안 될 것이다.

보따리장사 등 엉망으로 시작된 잘못된 慣行이 언제까지 유지되어도 좋은가? 해방 이후 교수가 절대적으로 빈곤한 풍토에서 교수들은 보따리장사를 일삼았고 기타 여러 잡일을 했다. 그렇게 잘못 끼워진 첫단추가 오늘의 잘못된 전통을 만들었다. 이제는 그것도 경상으로 돌릴 시점에 왔다. 자율적인 직무규율이 불가능하면 법으로 엄격하게 다스려야 할 문제이다. 특히 학생들이 교수들을 감시하여야 할 시점이 왔다. 적어도 강의평가제는 조속히 실시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권리자인 학생들을 위한 강의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갖추어져야 한다. ■